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281 |
|----------|-------|

발의연월일 : 2022. 12. 30.

발의자 : 맹성규 · 강훈식 · 김경만

김영호 · 남인순 · 노웅래

박찬대 · 소병철 · 우원식

윤후덕 · 이정문 · 임종성

장철민 · 전재수 · 정일영

최인호 · 허영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말소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 · 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항공기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국제기준을 마련하였음.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 ③ (생 략) <u><신 설></u></p> | <p>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u> <u>는 제3항에 따라 항공기 말소</u> <u>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u> <u>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u> <u>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하</u> <u>여야 한다.</u></p> |